

# 예산총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892,500,000	26,775,000
일반회계	793,500,000	23,805,000
특별회계	99,000,000	2,970,000
공기업특별회계	87,100,000	2,613,000
상수도사업	55,500,000	1,665,000
하수도사업	31,600,000	948,000
기타특별회계	11,900,000	357,000
의료보호기금사업	2,039,000	61,170
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	172,000	5,160
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	2,961,000	88,830
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	1,465,000	43,950
주택사업	192,000	5,760
주차장설치사업	500,000	15,000
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	154,000	4,620
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	475,000	14,250
학교급식지원센터	3,942,000	118,26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,666,237천원 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.

- ① 인건비,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-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